

#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0
----------	-----

제출연월일 : 1999. 9.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주차장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환승주차장 이용객의 편의화를 위한 주차요금의 개정과 주차요금 징수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 단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3급지 주차요금을 환승자와 비환승자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환승주차장의 이용 편의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 (일정 1 및 별표 6)

(단위: 원)

현 행				개 정				
구분	1회주차요금 (1구간당 30분마다)	1 일 주차요금	월 정 기 주차요금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간당 30분마다)	1 일 주차요금	월 정 기 주 차 권	
3급지	300	2,000	30,000	3급지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환승차량	500	5,000	70,000

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은 물론, 자유경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4조)

다. 주차장정비지구가 폐지되고 상위지역외의 특장지역에 대한 규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고, 무설비 차량의 설치기준이 당초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무설주차장 신차기준이 7개 종류로 단순화됨에 따라 우리시 입장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함. (안 제7조)

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1~3퍼센트 내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인구전체에 장애인수를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함. (안 제10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① 주차장법

②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① 예고기간 : '99. 7. 30 ~ 8. 18 (20일)

②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물가대책 심의 : '99. 7. 8

## 안 산 시 주 차 장 조 례

[ 안산시조례 제72호 ]  
1986. 1. 1  
개정 1987. 8. 21 조례 제174호  
개정 1989. 7. 5 조례 제274호  
개정 1993. 5. 27 조례 제494호  
개정 1995. 1. 17 조례 제588호  
개정 1996. 4. 9 조례 제694호  
개정 1996. 11.14 조례 제714호  
개정 1998. 3. 25 조례 제784호  
개정 1999. 1. 13 조례 제818호  
전문개정 2000. 1. 14 조례 제89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중 무료화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치,면적등을 지정(해제)고시한다.

**제3조 (주차장이용안내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등 이용에 관한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이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가격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입찰가격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1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점용면적( $m^2$ ) × 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m^2$ ) × 면수 × 당해(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 지수
3.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m^2$ ) × 면수 × 당해(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 지수

$$\text{※ 지수} = \frac{\text{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text{1급지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수탁자가 계약기간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재계약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와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⑧ 수탁자는 공영주차장내 차량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점유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한다.

②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 법 제19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9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른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영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도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坦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표 5의 장애인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 및 응자)** ①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응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응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또는 응자의 대상, 방법 및 응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관련)

급지구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권(선불)
1급지	500 원	5,000 원	70,000 원
2급지	300 원	2,000 원	40,000 원
3급지	환승차량	200 원	30,000 원
	비환승차량	500 원	7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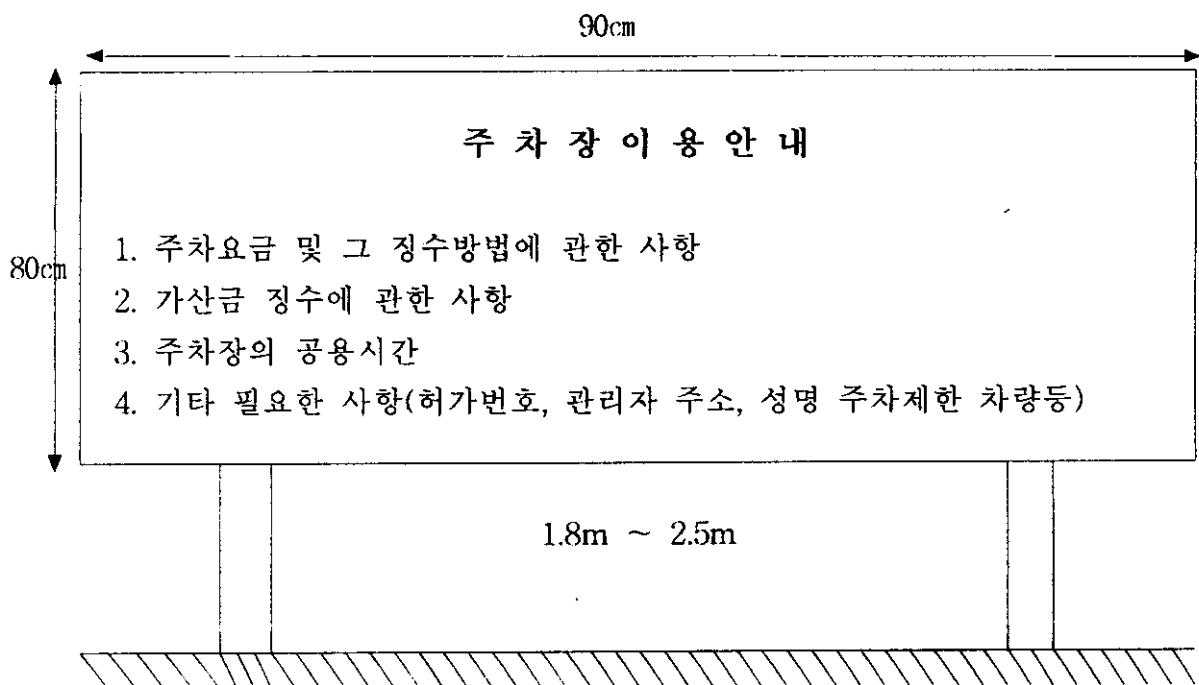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제24주차장, 제25주차장, 반월, 대부, 안산동일원의 공영주차장 및 역세권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 나. 2급지 : 제24주차장, 제25주차장, 반월, 대부, 안산동소재 주차장
  - 다. 3급지 : 시장이 지정한 역세권 환승주차장
3.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에 의해 확인 받은자에 한하여 3급지 환승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4.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자가용 10부제 운행참여 스티카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승용차(800씨씨미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상이자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 한다.
- 마.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4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 가 부담한다.
6.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토요일 09:00~14:00)
-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5:00 ~ 24:30
7. 주차장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정한다.
8. 기준요금은 30분 단위로 징수하되,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40분 미만까지 30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9. 공휴일 및 일요일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1일 주차라 함은 공영주차장에 10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주차요금을 선납 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일 경과후 (익일 09:00이후)에는 1회 주차요금을 적용 한다.

## 【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 기준 (제3조 관련)

##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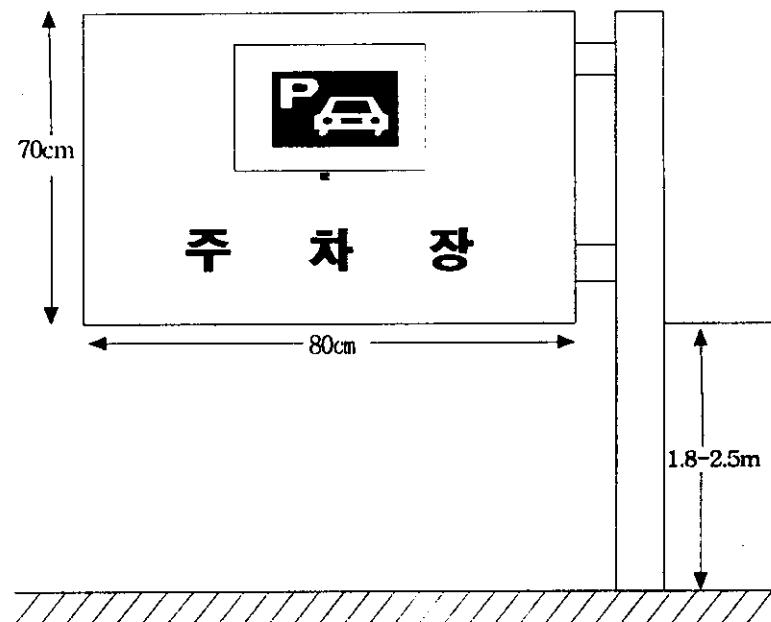


- 비 고 -

구 分	재 료	색 체	
		바 탕	글 씨 (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	"	"

\* 색체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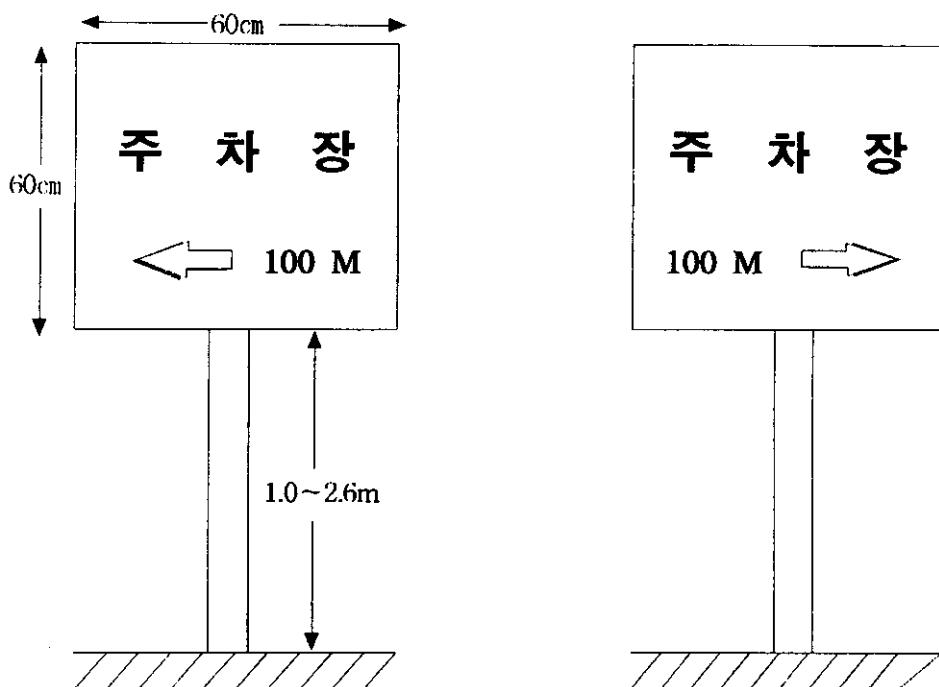
## 2. 노외주차장 표지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청색)
    - 문자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30cm × 세로25cm)  
문자 (가로17cm × 세로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 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 3.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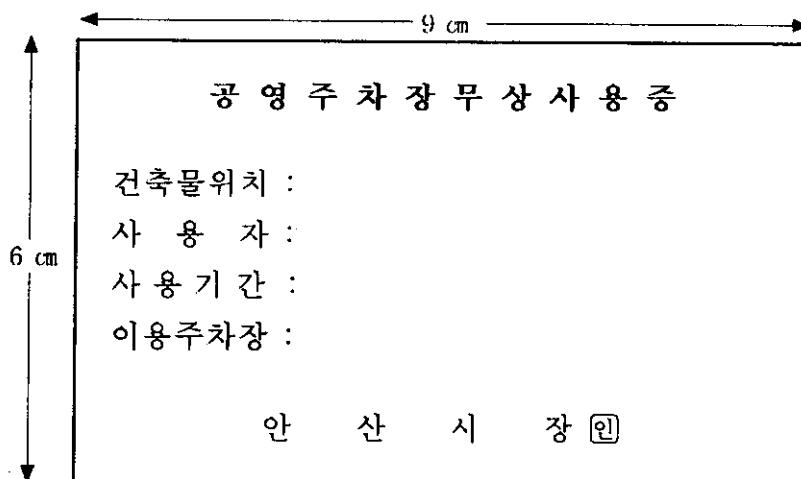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 (제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등 방송국	시설면적 150m'당 1대
3. 의료시설	시설면적 150m'당 1대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시설
	시설면적 80m'당 1대 장례식장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비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당 1대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m'초과 200m'이하의 경우 에는 1대, 시설면적 200m'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를 초과하는 130m'당 1대를 더한 대수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 외 한다)	시설면적 120m'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8.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m'당 1대

## 【별표 4】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제9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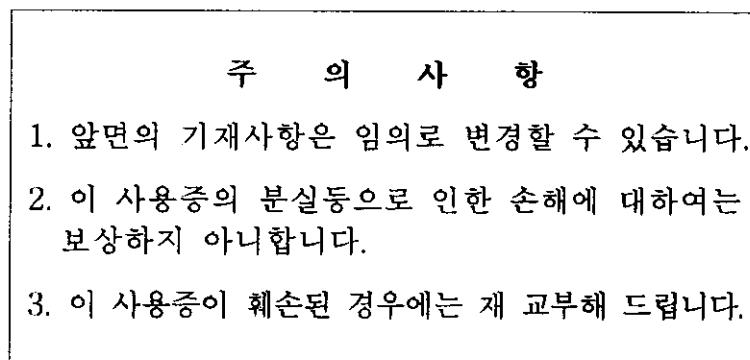
(앞 면)



##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 면)



【별표 5】

장애인 전용 표지 (제10조 제2항 2호 관련)



- 비 고 -

○ 규격

- 표지판 : 40cm × 40cm
-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0cm × 세로 32cm

○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별표 6】

도 시 철 도 이 용 확 인 증 (별표 1제3호 관련)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확인증															
○ 확인 일 시															
○ 이용철도역 확인란															
<p>1. 위와같이 도시철도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승주차요금의 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1회주차요금 (1구획당30분)</th> <th>1일주차요금</th> <th>월정기주차권</th> </tr> </thead> <tbody> <tr> <td>환승차량</td> <td>200</td> <td>2,000</td> <td>30,000</td> </tr> <tr> <td>비환승차량</td> <td>500</td> <td>5,000</td> <td>70,000</td> </tr> </tbody> </table> <p>2. 다만, 본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 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게시판에 지정여부표시) 에 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역 환승주차장</p>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30분)	1일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환승차량	500	5,000	70,000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30분)	1일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환승차량	500	5,000	70,000												